

서울고등법원 2016. 4. 28 선고 2016나2001418 판결 [하자보수보증금청구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16. 4. 28 선고 2016나2001418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 11. 27 선고 2014가합112065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명구름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

피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

피고보조참가인, 항소인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

변론 종결 2016. 4. 7.

판결 선고 2016. 4. 28.

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4가합112065 판결

주문

1.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1,250,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11. 27.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가. 원고: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,250,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11. 27.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).

나. 피고: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제1심판결은 정당하다.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성지용

판사공도일

판사박선영